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0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정의 규정상의 부부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난임부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, 인용법령을 정비 함.
(안 제2조 제5호, 제6호, 제8호)

4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“난임” 정의 규정상 부부의 개념에 포함하고 “대통령령”을 “모자보건법시행령”으로 정비하여 인용법령의 명칭을 구체화한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모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9. 4. 23.>

11. “난임(難妊)”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. 7.]